
2017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2017. 4.



연구과제 신청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사업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학위 등)은 다음 쪽 참조
- ②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는 [붙임4]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탑재 방법은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 참고)
- ④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온라인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학제간연구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7. 5. 23.(화) 14:00 ~ 2017. 5. 29.(월) 18:00
주관연구기관 확인	2017. 5. 23.(화) 14:00 ~ 2017. 5. 31.(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신청 완료
구비서류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페이지 우측상단> KRI협정체결기관현황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구분	항목	비고
기본정보	생년월일	예) 19701231
	성별	남성(1), 여성(2)
	연구실 전화번호	예) 02-123-1234
	이메일	예) sample@aaa.edu
	소속기관	
	단과대학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단과대구분없음'으로 입력
	학과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 '소속학과없음'으로 입력
전공 및 심사가능분야	전공코드	
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박사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석사인 경우 : 학사 정보 필수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학과명 입력▷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16	2017
지원예산	○ 총예산 : 5,000백만원(35과제) - 신규 : 1,937백만원(22과제) - 계속 : 3,063백만원(13과제)	○ 총예산 : 5,000백만원(24과제 내외) - 신규 : 915백만원(8과제 내외) - 계속 : 4,085백만원(16과제 이내)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와 이공계 융합연구분야	○ 좌동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기관 소속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	○ 좌동
지원유형	○ 씨앗형 : 신규 18과제 ○ 새싹형 - 신규 4과제 - 계속 12과제 - 기존 과제유형(씨앗형 등) 수행 없이 새싹형으로 바로 진입 가능 ○ 융합연구총괄센터 : 계속 1과제	○ 씨앗형 : 신규 5과제 내외 ○ 새싹형 - 신규 2과제 내외 - 계속 16과제 이내 - 좌동 ○ 융합연구총괄센터 : 신규 1과제
지원규모	○ 씨앗형 : 연간 40백만원 이내 ○ 새싹형 : 연간 200백만원 이내 ○ 융합연구총괄센터 : 연간 130백만원	○ 좌동 ○ 좌동 ○ 좌동
지원기간	○ 씨앗형 : 1년 ○ 새싹형 : 5년(3+2) ○ 융합연구총괄센터 운영: 3년	○ 좌동 ○ 좌동 ○ 좌동
선정평가	○ 씨앗형 :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종합평가 ○ 새싹형 :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발표)→종합평가 ○ 융합연구총괄센터 :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발표)→종합평가	○ 좌동 ○ 좌동 ○ 좌동
연차점검	○ 컨설팅 기능 위주의 연차점검 실시	○ 좌동
단계평가	○ 단계평가 결과 페널티, 인센티브 부여 또는 탈락 가능	○ 좌동
성과평가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결과평가 실시(단,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업적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시 결과평가 면제)	○ 좌동
추진일정	○ 신규 과제 - 4월 공고/5월 접수/6~8월 평가 및 선정 - 연구개시 : 9. 1.	○ 좌동

- 과제수행 주요절차 -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사업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공고 및 과제 접수	• 한국연구재단
	↓ 선정 평가	• 한국연구재단(학문단)
	↓ 지원과제 예비 선정	• 한국연구재단
	↓ 최종 선정 발표	• 한국연구재단
	↓ 협약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자/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 연차보고서 제출 (다년차 과제 종료 2개월 이내)	• 연구자 (다년도 과제 해당)
	↓ 단계 보고서 제출 (단계 종료 2개월 이내)	• 연구자 (단계 진입과제 해당)
	↓ 정산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관연구기관/연구자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이후)	↓ 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 연구자
	↓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자
	↓ 종료과제 결과평가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자 대상)	• 한국연구재단
	↓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 연구자/주관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과제 종료		

- 차례 -

I. 사업목적 및 개요	1
II. 지원내용	3
III. 신 청	4
1. 신청자격	4
2. 신청 및 참여제한	7
3. 신청기간 및 방법	8
4. 신청절차	9
IV. 선정평가	11
V. 사업비 관리	14
VI. 연구과제 관리	14
1.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4
2.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평가	18
3. 융합연구 네트워킹 활동	20
4. 학술활동 성과 관리	21
VII. 기타사항	22
[붙임1]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24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25
[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짜얏 및 새작형)	32
[붙임4] 연구계획서 양식(융합연구총괄센터)	37
[붙임5] 융합연구총괄센터 연구과제 제안설명서	42
[붙임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43
[붙임7]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FAQ	44

I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 과학적 합리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3. 중점 추진방향

- 인문사회, 문화, 예술과 과학기술과의 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체계적 융합연구 지원·달성 및 학제간융합연구의 성과 공유·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기간 중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되,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창출
- 연구종료 2년 이후 결과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윤리 교육 실시

4. 기대효과

- 학제간 융합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학문간 경계를 넘어선 창조적 연구성과 창출
- 인문학·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회 문제 진단 및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17. 4월	▪ 신규과제 신청공고
'17. 5.~6월	▪ 신규과제 신청접수
'17. 6.~8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7. 9월	▪ 신규과제(씨앗형, 새싹형, 총괄센터) 및 계속과제(새싹형) 연구개시

II

지원내용

1. 예산

(단위 : 백만원/과제)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신규과제	915	8
계속과제	4,085	16
합 계	5,000	24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와 이공분야(자연과학·공학·의약학·농수해양)의 융합연구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성격	지원규모	지원기간
씨앗형	아젠다 발굴 위주의 기획 지원	4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지급)	1년
새싹형	중장기 학제간융합연구 지원	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지급)	5년(3+2)*
융합연구 총괄센터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간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13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지급)	3년

※ 새싹형 지원기간 : 5년(1단계 : 3년 + 2단계 : 2년)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7. 9. 1.

Ⅲ

신 청

1. 신청자격

- 연구자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 있어야 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2.1.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포함)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전임연구인력은 업적 요건 대상에서 제외함

- 유형별 자격요건

가. 씨앗형

구분		참여자격	연구업적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연구자	연구업적 3편이상 (이공분야 5편)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대학에 전임 및 시간강사 이상 또는 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연구자	
	박사급 연구원	타 기관 및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나. 새싹형

구분		참여자격	연구업적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연구자	연구업적 3편이상 (이공분야 5편)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대학에 전임 및 시간강사 이상 또는 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연구자	
	박사급 연구원	타 기관 및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전임연구 인력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팀 상근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업적요건 대상 제외

다. 융합연구총괄센터

구분		참여자격	연구업적
연구책임자		신청 기관 대학부설연구소 소속교원	연구업적 3편이상 (이공분야 5편)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에 한함	
	박사급 연구원	타 기관 및 타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전임연구 인력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팀 상근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	업적요건 대상 제외

※ 단,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융합연구 수행 경험과 홈페이지 운영 기반(운영경험, 서버, 인력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학부설 연구소에 한정

○ 연구팀 구성요건

지원유형	연구팀 구성	지원규모	지원기간
씨앗형	연구책임자 포함 4인이상	4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지급)	1년
새싹형	연구책임자 포함 6인이상	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지급)	5년(3+2)
융합연구 총괄센터	대학부설연구소	13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지급)	3년

※ 씨앗형, 새싹형 연구팀 구성 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중 어느 한 분야의 전공자 비율 2/3 초과 금지

※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연구팀 구성 시 전공분야 비율 제한에서 제외함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일제(Full-Time)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30백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는 10% 별도 지원함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2.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하반기 선정 사업”(9.1., 11.1. 연구개시)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하반기 선정 사업 : 학문후속세대지원(시간강사연구지원), 우수논문지원, 신흥지역 연구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사업 포함),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한국(HK)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인문전략연구 중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 공동연구원은 신규 신청과제수와 기 참여과제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적용범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지원사업(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종료일이 2017. 12. 31.까지인 과제는 미포함)
 - (예외) 인문사회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연구종료일에 관계없이 과제 수에 미포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 ① 우수학자지원사업
- ②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중 정책중점연구소
- ③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단기과제
-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석학인문강좌,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브랜드강화사업)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불가
 - 신청 이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는 경우, 연구개시일부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인건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본 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7. 5. 23.(화) 14:00 ~ 5. 29.(월) 18:00
 - 기 관 확 인 : 2017. 5. 23.(화) 14:00 ~ 5. 31.(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신청절차

구 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5.22.)	① 사업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연구자 개별 준비
	② KRI 연구업적 및 개인정보 수정		
	③ 연구계획서 작성		
	④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온라인 신청 (5.23~5.29)	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② 「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파일 탑재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 라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5.23~5.31.)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가.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 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반드시 '공개'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3]의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흔글」 또는 「MS워드」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 3)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심사요청학문분야를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연구분야
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 4)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HAT) 및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

- 융합연구총괄센터(HAT, www.hat.re.kr) :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간 융합연구 소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의회 및 연구 성과발표회, Hubcon 컨퍼런스 개최를 주관하고 있음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

나. 온라인 신청

- 1)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 확인 가능)
- 2)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가 KRI에 입력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은 신청요건 확인에 활용하고 평가 시 업적평가에 반영됨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4]양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하고,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 6)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 시 [붙임1]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7) 연구장비 신청 시 사유를 온라인에 입력하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PC,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캠코더 등)의 구입 사양

다. 온라인 신청완료 후

1)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2)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IV

선정평가

1. 평가단계

가. 씨앗형

구분	평가구분	평가방법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평가(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등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나. 새싹형, 융합연구총괄센터

구분	평가구분	평가방법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등	전공평가단
	패널평가 발표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등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토의에 의한 평가(씨앗형, 새싹형, 융합센터 대상 실시)
 - 발표평가 : 패널평가에서의 의문사항, 연구진의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 협력사항 등 확인(새싹형, 융합센터 대상 실시)
- ※ 새싹형, 융합연구총괄센터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
 *발표평가 대상과제 : 최종선정 과제수의 3배수 내외로 선정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씨앗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융합연구의 적합성 평가	융합연구의 적합성	30
연구계획 평가	연구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업적 및 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업적 및 역량평가	10
	연구팀 연구실적 평가	15
파급효과	연구성과 확산가능성	20
합계		100

- 새싹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융합연구의 적합성 평가	융합연구의 적합성	30
연구계획 평가	연구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업적 및 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업적 및 역량평가	10
	연구팀 연구실적 평가	15
파급효과	연구성과 확산가능성	15
	인력양성 계획	5
합계		100

- 융합연구총괄센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계획서	수행목표 및 내용	20
	수행방법	2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0
	예산편성의 타당성	5
연구역량	연구소 역량	15
	연구소 기반	15
합계		100

다.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3.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표절,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협약 체결

V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체결 이후 집행하여야 함
 - ※ 다년 과제의 경우 연차점검 후 계속지원 확정 시 사업비 지급

2.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VI

연구과제 관리

1.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점검

1)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 : 새싹형 및 융합연구총괄센터
-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2) 연차점검

- 점검대상 : 새싹형 및 융합연구총괄센터
- 점검시기 :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년차 연구개시 전

○ 점검방법

구분	점검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온라인)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점검단

○ 점검항목 및 내용

점검항목	점검내용
기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연차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사업비 삭감가능)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수립

○ 점검결과 활용 : 다음연차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나.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단계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 : 새싹형 1단계 3년차 과제
- 제출시기 : 3년차 사업개시 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2) 단계평가

- 평가대상 : 새싹형 1단계 3년차 과제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접수 후 다음단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서면+발표)	연구책임자의 서면·발표를 통해 사업 수행성과, 사업관리 및 학술활동(단행본 서적 발간 및 공개토론회 개최), 향후 계획 등을 평가 수행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전공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 단계평가 결과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사업비 삭감가능)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다.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 입력

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 : 씨앗형, 새싹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종료과제
 - 씨앗형 : 아젠다 발굴 위주의 기획결과 기술
 - 새싹형 : 중장기 학제간융합연구 연구성과 기술
 - 융합연구총괄센터 : 총괄센터로의 역할 수행활동 기술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
 -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직접 입력
 - ※ 학술활동 요약문은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직접 입력
 -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 파일 탑재(해당 시)
 - ※ 학술활동 성과는 VI. 연구과제 관리의 3.학술활동 성과 관리 세부내역 참조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제재 조치

2) 결과보고서 평가

- 평가대상 : 씨앗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종료과제
 - ※ 새싹형은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 시에만 결과평가(결과보고서 등 평가) 진행
-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 평가내용

지원유형	평가내용	평가대상
씨앗형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우수성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융합연구총괄센터	총괄센터로서의 역할 수행활동 우수성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최종평가 결과 확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 평가점수 및 조치
 - 평가결과 70점 미만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을 2년 제한함

2.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및 평가

가.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제출대상 : 새싹형 과제
 - ※ 씨앗형, 융합연구총괄센터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의무 없음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구분	논문수	비고
연구책임자	지원년수 × 1편 이상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공동연구원	1편 이상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사표기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를 허용함

※ 공동연구원의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미제출자 제재 조치

나. 종료과제 결과평가

○ 평가대상 : 새싹형 과제

※ 씨앗형, 융합연구총괄센터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없음

○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은 별도로 정함

○ 평가항목 및 지표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결과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3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학문적 파급 효과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노력	2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
	참고 자료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대상과제 : 2017년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대상 과제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미흡', '불량' 판정 과제는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3. 융합연구 네트워킹 활동

가. 융합연구총괄센터 학술활동 성과 발표에 대한 책무

유 형	융합연구총괄센터
협의회 개최 등 개별연구팀간 교류 활동	연 4회 이상
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운영 및 개별 연구팀 연구활동 안내	수시
HubCon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	각 연 1회
융합연구동향분석 보고서 제출	연 1회

※ 연차,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책무 수행내역을 기재하여 평가

나. 씨앗형, 새싹형 과제 학술활동 성과 발표에 대한 책무

유형	씨앗형	새싹형
협의회, 성과발표회 참여 및 융합연구총괄센터 적극협조	필수	필수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필수	필수
연구팀 주관 공개발표 및 토론회(포럼, 세미나 등) 연 1회 이상 개최	장려	필수

※ 연차,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책무 수행내역을 기재하여 평가

4. 학술활동 성과 관리

-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10항)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VII

기타 사항

1. 간접비 지급

- 간접비는 신규 및 계속 과제에의 경우 협약시점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단계평가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시점의 고시율 적용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
 -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문의 www.nibp.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17년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연구상담센터	1544-6118
	인문사회연구지원팀	042-869-6721 042-869-6205 042-869-6206
평가 관련 문의	문화융복합단	042-869-6137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전산장애, KRI 관련 문의	정보팀 Help Desk	1544-6118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042-869-6106

붙임1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전문 인건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 인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박사급연구원(월 170만원이내 / 1인당) 전임연구인력(연 3,000만원 이상 /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학생 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 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 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송기료, 운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 활동 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 참여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 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하거나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당초 직접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할 수 없음
- ※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박사급연구원 또는 전임연구인력의 경우, 위의 "전문인건비"를 계상 기준에 따라 편성 할 수 있음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1. 신규과제 평가

○ **씨앗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융합연구의 적합성 평가 (30)	융합연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융합연구로 적합한 주제인가? ■ 참여연구원의 전공분야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30
연구계획 평가 (25)	연구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이 1년간 아젠다 도출을 위한 사전 기획으로써 장기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25
연구업적 및 수행능력 (25)	연구책임자의 업적 및 역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관련 업적 및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는가?(사업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능력, 철학 및 열정 등 포함) 	10
	연구팀 연구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팀의 참여연구원 연구실적(A&HCI, SSCI, SCI(E), SCOPUS급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 수)의 우수성, 융합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15
파급효과 (20)	연구성과 확산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성과확산을 통한 파급 효과가 높은 연구인가? 	20
합계			100

○ 새싹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융합연구의 적합성 평가 (30)	융합연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융합연구로 적합한 주제인가? ■ 참여연구원의 전공분야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30
연구계획 평가 (25)	연구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추진 계획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 예산편성은 적절한가? 	25
연구업적 및 수행능력 (25)	연구책임자의 업적 및 역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관련 업적 및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능력, 철학 및 열정 등 포함) 	10
	연구팀 연구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팀의 참여연구원 연구실적(A&HCI, SSCI, SCI(E), SCOPUS급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수)의 우수성, 융합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15
파급효과 (20)	연구성과 확산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성과확산을 통한 파급 효과가 높은 연구인가? 	15
	인력양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적 안목을 가진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5
합계			100

○ 융합연구총괄센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계획서 (70)	수행목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수행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수행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20
	수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 연구진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확산 및 홍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20
	예산편성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은 적정한가? 	5
연구역량 (30)	연구소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센터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가? 	15
	연구소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에서 융합연구 수행경험이 있는가? ■ 연구소 내 홈페이지 운영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15
합계			100

2. 연차점검

○ 새싹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년차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융합연구총괄센터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수행의 목표달성도	목표 달성 노력(연구팀 간 커뮤니케이션 등)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연구결과의 질적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아젠다 발굴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성과의 확산정도

3. 단계평가

○ 새싹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1단계 연구성과 (60)	연구수행의 목표대비 달성도 및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취지와 당초 연구 목표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는가? ■ 당초의 연구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하였는가? ■ 연구수행결과가 우수한가? 	40
	연구수행 과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절차가 적절하였는가? ■ 연구팀 내 학문분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 	10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내용·연구 성과의 적극적인 공유, 확산 및 소통에 노력하였는가? ■ 타 연구팀과의 네트워크 활동에 노력하였는가? 	10
2단계 연구계획 (40)	연구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이 융합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연구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연구내용이 학문적,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혁신적, 창의적인가? ■ 연구내용이 1단계 연구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0
	추진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연구팀 구성(참여연구원의 전공분야 및 연구원 수 등)이 적절한가? ※ 1단계 연구진의 연속성 및 변경 시 타당성 여부 ■ 예산편성은 적정한가? 	10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연구인가? ■ 장기적으로 융합연구 인재양성 효과와 교육에의 활용성이 큰 연구인가? 	10
합계			100

4.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 씨앗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수행의 목표달성도 (25)	목표 달성 노력(연구팀내 커뮤니케이션 등)	25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15)	연구 방법의 적합성	15
연구결과의 질적수준 (30)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융합연구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30)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30
	연구성과의 확산정도	
합계		100

○ 융합연구총괄센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수행의 목표달성도 (30)	목표 달성 노력(연구팀간 커뮤니케이션 등)	3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20)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
연구결과의 질적수준 (20)	결과의 질적 우수성	20
연구결과의 기여도 (30)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30
	연구성과의 확산정도	
합계		100

5. 결과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0)	결과의 질적 우수성	○ 최근의 학문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인가?	15
	결과의 독창성	○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고 독창적인가?	1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0)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1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 해당학문의 이론과 실체를 선도하여 발전시키는 것인가?	10
	학문적 파급 효과	○ 학문의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10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20)	목표 달성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1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 당초 계획된 목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10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20)	연구 방법의 적합성	○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10
	참고 자료의 적절성	○ 연구수행 과정의 참고 자료나 문헌 등이 적절히 인용되었으며 도움이 되었는가?	10
합계			100

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씨앗 및 새싹형)

연구 계획서

사업명		2017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문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과제명과 동일해야 함					
	영문						
지원유형 (해당되는 부분에 ○ 체크)		씨앗형(1년)			새싹형(5년(3+2))		
연구분야	구분	연구분야 1		연구분야 2		연구분야 3	
	분야						
	비율						
신청연구비* 및 참여인원	신청연구비	1차년도	천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연구책임자	1명
		2차년도	천원			일반공동연구원	명
		3차년도	천원			박사급연구원	명
		합계	천원			전임연구인력	명
						합계	명

※ 신청연구비는 씨앗형은 1차년도만 작성하고, 새싹형은 1단계(3년) 연차별 연구비를 작성함

<목차>

I. 연구요약	0
II. 연구내용	0
1. 연구의 목적	0
2. 연구방법 및 내용	0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0
4. 결과 활용방안	0
5. 기타사항	0
6. 추진일정	0
7. 참고문헌	0

이 쪽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서에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할 것
- ◎ 연구계획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여 작성함
- ◎ 연구계획서는 작성은 A4 용지 30쪽 이내(Ⅱ.연구내용의 1.연구의 목적~6.추진일정)로 작성 (단, ‘Ⅱ-7. 참고문헌’은 쪽수(page)에 포함되지 않음)
- ◎ 글자크기는 13point로 권장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 연구과제의 평가는 연구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업적을 공개하는 오픈(Open) 평가를 실시함. 기존 연구업적 및 활동 등 연구진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할 것
- ◎ ‘연구비 사용계획’은 본 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으나, 신청요강 내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24쪽)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신청연구비’ 항목)에 직접 입력
-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표기)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함

I. 연구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탭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입력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II.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융합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중점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추진전략, 연구방법을 기술함)

※ 새싹형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1차년도~5차년도)하여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역량

1) 연구진 구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연구분야별로 기술함)

< 예시 >

연구분야	참여자	참여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홍길동	연구책임자	
	김대한	일반공동연구원	
	김민국	박사급연구원	
	김만세	전임연구인력	
	
	

2) 연구역량

(연구진 개개인 또는 연구팀이 과거 업적을 바탕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

< 예시 : 씨앗형 수행경험, 사전기획연구경험 또는 공동연구 수행실적 및 성과 >

4.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5.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6. 추진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씨앗형은 1차년도만 작성, 새싹형은 5차년도까지 작성(아래 예시표 참고)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간(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7.9.		

※ 2차~5차년도 일정도 동일하게 작성

7. 참고문헌

※ 쪽수(page) 산출(30쪽 이내)에 미포함

붙임3

연구계획서 양식(융합연구총괄센터)

연구 계획서

사업명		2017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융합연구총괄센터						
대학명					연구소명			
연구규모	신청연구비	연구기간	3년 (2017. 9. 1. ~ 2020. 8. 31.)					
		1차년도	천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연구책임자	1명		
		2차년도	천원		일반공동연구원	명		
		3차년도	천원		박사급연구원	명		
		합계	천원		전임연구인력	명		
			합계	명				

<목차>

I. 연구요약	0
II. 연구내용	0
1. 수행목표	0
2. 수행내용 및 방법	0
3. 수행계획	0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0
5. 사업비 집행 계획	0
6. 참고문헌	0
III. 기관 운영 계획 및 현황	0
1. 기관(연구소) 운영 계획	0
2. 연구소 현황	0
3. 연구 기자재 보유 현황	0
4. 기타 사항	0

이 쪽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서에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할 것
- ◎ 연구계획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여 작성함
- ◎ 연구계획서는 작성은 A4 용지 30쪽 이내로 작성 (단, ‘I-6. 참고문헌’은 쪽수(page)에 포함되지 않음)
- ◎ 글자크기는 13point로 권장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 ‘연구비 사용계획’은 본 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으나, 신청요강 내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24쪽)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신청연구비’ 항목)에 직접 입력
-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파란색 표기)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함

I. 연구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 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탭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입력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II. 연구내용

1. 수행목표

2. 수행내용 및 방법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추진 방법, 추진 전략 등을 기술)

3. 수행계획

(연구단의 조직도 및 업무 분장 등을 기술)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사업 수행 계획을 기술)

※ 향후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 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 분담 내역 및 연구 수행 계획을 기술함.

< 예시 >

연구분야	참여자	참여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홍길동	연구책임자	
	김대한	일반공동연구원	
	김민국	박사급연구원	
	김만세	전임연구인력	
	

(과제 목표와 추진 기간별로 연구 수행 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과제목표		
기간(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7.9.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5. 사업비 집행 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사업비 타당성 등 기술)

6. 참고 문헌

Ⅲ. 기관 운영 계획 및 현황

1. 기관(연구소) 운영 계획

(본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소 인력, 시설, 연구공간 활용 계획 등 기술)

2. 연구소 현황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수행 실적 등 기술)

(최근 3년간 연구비 확보 및 연구 수행 실적 등 기술)

3. 연구 기자재 보유 현황

(보유하고 있는 H/W 및 S/W 현황 기술)

구분	품명	용도	수량	금액(단가*수량)
H/W				
S/W				
소 계				

4. 기타 사항

(대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이나 연구소 자립 방안 등 운영 계획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붙임3

융합연구총괄센터 연구과제 제안설명서

연구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융합연구총괄센터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수요 및 연구수행이 확대되고 있는 학제간 융합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 지원과제 연구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팀 간의 소통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및 대언론·대국민 홍보,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합동 발표회 개최를 통해 학제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함
연구내용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융합연구총괄센터(이하 총괄센터)로서 융합 연구센터 협의회 구성 후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연구성과 확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센터 협의회 운영 :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팀간 교류 확대 및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 유도 -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성과자료집 발간 ○ 융합연구 성과의 집적 및 롤 모델 제시로 개별연구팀에 노하우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융합연구 개별 과제들의 성과 및 세미나 개최 안내 등 ○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융합연구 동향분석을 통한 분석 보고서 제출 ○ 융합연구총괄센터 성과 공유 및 융합연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HubCon 컨퍼런스, 세미나 정례화
연구추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개최 등 개별연구팀간 교류 활동(연 4회 이상) ○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연 1회 이상 개최) ○ 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개별 연구팀 연구활동 안내 등(연구 보조원 1명 이상의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 필요) ○ 융합연구 동향분석을 통한 융합연구 동향 분석 보고서 제출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제출) ○ 융합연구총괄센터 HubCon 컨퍼런스, 세미나 개최(각 연 1회 개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보고서 제출(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전 제출) 후 평가 실시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과제 종료후 3개월 이내) 후 평가 실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 130,000천원/연 (₩130,000,000원)(간접비 별도) ○ 연구기간 : 2017.9.1. ~ 2020.8.31. (3년)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전원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시스템에 탑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신한카드, IBK기업은행에 관련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본 동의서 서명에는 위조 등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신청년도 2017년
 연구과제명 _____

참여인력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1	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원				
3	공동연구원				
4	박사급연구원				

※ 연구보조원은 제외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FAQ

1. 씨앗형 과제와 새싹형 과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씨앗형, 새싹형 중 하나의 과제에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에 학문분야에 대한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문분야는 재단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인문사회(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 예술체육, 복합학 등), 이공(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등)으로 분류합니다.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3. 동일한 학문분야에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인문사회분야 내의 연구자 또는 이공분야 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연구자로만 구성 시 연구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연구자를 포함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중 어느 한 분야 전공자 비율이 2/3를 초과하여 연구팀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명)

연구진 수 (A+B)	(A)분야 최대인원	(B)분야 최소인원	연구진 수 (A+B)	(A)분야 최대인원	(B)분야 최소인원
4	2	2	10	6	4
5	3	2	11	7	4
6	4	2	12	8	4
7	4	3	13	8	5
8	5	3	14	9	5
9	6	3	15	10	5

4. 새싹형으로 선정된 과제는 5년간 지원하나요?

→ 새싹형으로 선정된 과제는 1단계로 3년간 지원받습니다. 3년차에 실시하는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2년간)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비도 새롭게 계상됩니다.

5. 연구팀 구성원은 사업기간동안 유지해야 합니까?

→ 제출하신 연구계획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의 구성원은 사업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박사급 연구원은 타당한 사유가 발생 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보조원은 필수인가요? 반드시 현 소속대학의 연구보조원을 넣어야 합니까?

→ 과제의 특성상 연구보조원이 필요 없는 경우는 연구보조원을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구보조원의 소속은 연구책임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연구보조원 수만 입력하고, 선정 이후 채용하시면 됩니다.

7. 발표평가는 씨앗형, 새싹형 과제 모두 시행하나요?

→ 씨앗형 :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평가)→종합평가 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 새싹형 :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평가,발표평가)→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완료 후 과제수를 고려하여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연구결과물은 씨앗형의 경우에도 제출해야 되나요?

→ 아닙니다. 연구결과물은 새싹형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씨앗형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 후 결과보고서 평가(신청요강 18쪽 참고)를 받게 됩니다.

9. IRB심의를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과제 신청 시 IRB심의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고,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문의 www.nibp.kr)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